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성주군 조례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,

○ 각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제명·인용조문 등 변경에 따른 정비(안 제1조～제14조)

- 대상 :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14개 조례
- 내용 : 상위법 개정·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 정비

○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(안 제15조～제28조)

- 대상 : 성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등 14개 조례
- 내용 : 일본식 한자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한자어 정비

정비대상 한 자 어	회무	통찰	지참	납골당	구좌	부락	사력	몽리자	게기	계리
순화용어	사무	총괄	지각	봉안당	계좌	마을	자갈	수혜자	규정	회계처리

○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규정 정비(안 제29조)

- 대상 :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
- 내용 : 「민법」 개정에 따라 폐지된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, 「민법」 등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제외대상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3호 및 제4호)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61647(2018. 11. 6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외 28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해당 조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